

아리아리! 정선  
the mecca of arirang, jeongseon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341호 2014. 12. 12. (금)**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392호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 1
- 정선군 조례 제2393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2
- 정선군 조례 제2394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정선군 조례 제2395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 23
- 정선군 조례 제2396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정선군 조례 제2397호 정선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 41
- 정선군 조례 제2398호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43
- 정선군 조례 제2399호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 정선군 조례 제2400호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53
- 정선군 조례 제2401호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 61
- 정선군 조례 제2402호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66
- 정선군 조례 제2403호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82
- 정선군 조례 제2404호 정선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 조례 ..... 86
- 정선군 조례 제2405호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89

##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47호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06
- 정선군 규칙 제1248호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113
- 정선군 규칙 제1249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 150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감사실 (전화:560-2227, FAX:560-2592)

# 조 례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392호

###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 10까지에 따라 정선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방법 및 사용,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예산의 편성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등에 따라 적절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편성 하여야 한다.

-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
-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은 해마다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④ 군수는 제1항과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 중에서 서로 뽑으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위원회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1. 정선군의회회장이 추천하는 의원
  2.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주사가 된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5.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등)**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해마다 당해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보에 고시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 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신청)** ①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를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교부결정)**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제16조(교부조건)**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율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사업자가 지방세 및 세외 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아니한다.

**제17조(교부결정 통지)**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6조에 따라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조건서를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8조(교부방법)** 지방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그 밖의 사업경비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 전이라 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수행상황 점검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경우
2.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3. 회계연도가 끝났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 금액을 확정

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제22조(정산검사)**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하였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사업자의 신고)** 지방보조사업자는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때
2. 사업이 폐지된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가 변경된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한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

**제25조(성과평가)** ①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6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2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9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갖추어 두어 군수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 제32조의9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군수는 법 제60조에 따라 지방보조 사업에 따른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사항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30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군수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해당 조항 중“ 「정선군보조금 관리조례」 ”를“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1. 「정선군 경로당 지원조례」 제3조제2항
2.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2항
3. 「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 제17조
4.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
5. 「정선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3조
6. 「정선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제11조
7.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제17조
8. 「정선군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제14조
9. 「정선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제16조
10.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12조
11. 「정선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21조제4항 및 제24조
12. 「정선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2조
13.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 제18조제2항
14. 「정선군중소기업육성융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제10조
15.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6.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제6조

② 「정선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정선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정선군 보조금관리조례」 ”를“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개 정 이 유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2015.1.1.시행) 및 안전행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표준준칙안」 시달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가 불가함 규정(안 제5조제2항)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안 제7조)
-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시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이 불가함 규정(안 제16조제3항)
- 지방보조사업 내역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시할 것 규정(안 제28조)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393호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를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로, “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를 “정선군 유공자”로, “이바지함”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로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이상”을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이상인 자로”를 “이상인 사람으로”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자는 지원에서”를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5만원 범위 안”을 “10만원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 범위에서 지급

제4조제3호 중 “기타 참전유공자의”를 “그 밖에 군수가”로 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자는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를 “사람은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일)”를 “전날로 한다)”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조에 따라”로, “발생 한”을 “발생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그도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참전유공자 공로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이나 다른 시·군·자치구로의 전출 및 제3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제7조 단서 중 “정선군”을 “군”으로, “전입한 때”를 “전입한 경우”로, “통해”를 “통하여”로,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를 “보고해야 하고, 이에 따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이하 “<u>법률</u>”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u>유공자</u>(이하 “<u>참전유공자</u>”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u>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6·25 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u>법률 제2조제1호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u></p> <p>2. “<u>참전유공자</u>”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 중 범죄</p>	<p><u>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u></p> <p>제1조(목적) - 조례는 「<u>참전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에 따라----- <u>정선군 유공자</u>----- 이 바지하기 위하여 <u>참전유공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u>참전유공자</u>”란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u>참전유공자로서 정선군</u>(이하 “<u>군</u>”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u>사람을 말한다.</u></p>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를 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이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고엽

제3조(지원대상)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  
-----  
--- 사람으로 -. -----

제 후유의증 판정을 받은 자는 만 60세 이상인 자로 하며,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 사정 등을 감안해 참전유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공로수당(이하 “참전공로수당”이라 한다)으로 매월 5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위로금으로 15만원 범위 안에서 지급
3. 기타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생략)

② 군수는 신청 받은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하여야

----- 사람은 ---- 이상인 사람으로 ----- 제3항에 따라----- 사람은-----.

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1. 참전유공자----- 10만원 범위-----
2.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 범위에서 지급
3. 그 밖에 군수가-----

제5조(지급대상자의 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 제3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참전공로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참전공로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참전공로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 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  
----- 사람은 군수에게 지급신청을 해야 ----.

② -----  
----- 전날로 한다) ----- 사람이 -----  
-----.

③ ----- 제3조에 따라-----  
-----  
----- 발생한 -----  
-----.

④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규정에 따른 유가족이 없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그도 없을 경우에는 장제를

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의 중단) 참전유공자 공로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이나 타 시·군·자치구로의 전출, 제3조 단서에 해당한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신고 이후 다시 정선군 관내로 전입한 때에는 군수에게 자격회복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읍·면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목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군수는 지급의 재개여부를 결정한다.

행하는 사람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의 중단) 군수는 참전유공자 공로수당과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이나 다른 시·군·자치구로의 전출 및 제3조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 군-----  
--- 전입한 경우-----  
-----  
----- 통하여 -  
----- 보고  
해야 하고, 이에 따라-----  
-----.

개 정 이 유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사망 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참전유공자 지원대상자 거주기간 제한규정 폐지(안 제3조)
  -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규정 폐지
- 참전유공자 공로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인상(안 제4조)
  - 공로수당 : 매월 5만원 ⇒ 10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 20만원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394호

##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15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제 1년 이상”을 “실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월 <u>5만원</u>의 호국보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을 지급한다.</p> <p>1. ~ 5. (생략)</p> <p>② (생략)</p> <p>③ 수당을 받고 있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u>15만원</u>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p> <p>④ (생략)</p> <p>제10조(수당의 지급대상자 등) ① 제9조제1항의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u>실제 1년 이상</u>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 ----- ----- ----- ----- <u>10만원</u>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20만원</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수당의 지급대상자 등) ① -- ----- ----- <u>실제</u> ----- -----.</p> <p>② (현행과 같음)</p>

개 정 이 유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호국보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금액 인상(안 제9조제1항·제3항)
  - 호국보훈수당 : 매월 5만원 ⇒ 10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 20만원
- 호국보훈수당 지급대상자 거주기간 제한규정 폐지(안 제10조제1항)
  -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1년 이상 거주기간 제한규정 폐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395호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정선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 등 그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에는 본청(실·과·단을 말한다)과 직속 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면을 말한다)을 둔다.

② 실·과·단에는 실장·과장·단장 등 보조·보좌기관을,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는 소장을, 하부행정기관에는 읍장·면장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실장·과장·단장, 소장 및 읍장·면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본청

**제3조(실·과·단 등)** ①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청에 다음 각 호의 실·과를 둔다.

1. 기획감사실

2. 자치행정과
3. 세무회계과
4. 여성청소년과
5. 주민생활지원과
6. 민원봉사과
7. 환경산림과
8. 농업축산과
9. 문화관광과
10. 지역경제과
11. 안전건설과
12. 도시건축과

② 제1항에 따른 실·과 외에 다음 각 호의 한시기구를 둔다.

1. 동계올림픽지원 등의 사무를 분장하는 동계올림픽지원단
2. 군의 규제개혁 사무를 분장하는 부군수 직속 규제개혁추진단

③ 실·과·단장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분장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 전반의 기획·조정 및 관리
2. 정선군의회 운영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업무
3.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평가 및 심사분석
4. 예산 편성·운용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관리
5. 지방채발행·일시차입 및 채무부담행위
6. 회계감사, 비위공무원 조사·처리
7. 법제·소송업무
8. 행정심판, 소청, 행정절차 업무
9. 군정 홍보 및 홍보물 발간
10. 미래전략 정책개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업무 총괄
11.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총괄
12. 제안 및 창안 업무
1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5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의 관리
2. 공무원 임용 및 징계처리

3. 행정구역, 선거관리 업무
4.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업무
5. 행사·의전 관련업무
6. 공무원 교육훈련·포상·후생복지·복무 및 공무원단체 관리
7. 보안업무 전반
8. 자원봉사센터 관리 운영
9. 민방위 관련업무, 충무계획 및 정부연습계획의 실시 업무
10. 주민자치센터 관리 운영
11. 행정통신 시설장비의 운용 및 유지관리
12. 행정전산정보화 및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13.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조정과 지정
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6조(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군세의 부과·징수
2. 도세의 부과·징수
3. 자금의 운용 및 관리 감독
4. 채권, 세외수입 등 지방세정 업무
5. 세무조사, 지방세 구제 및 세무상담
6.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과세표준 업무
7. 지방세 채납관리
8. 공사, 용역, 구매 계약체결
9. 물품관리 총괄
10. 세출예산 집행관리 및 회계결산
11. 회계의 운영 및 평가
12.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13. 국·공유재산의 관리
1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7조(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및 생활개선
2. 여성·아동·청소년복지 업무의 종합기획 및 시행
3. 여성·아동·청소년복지 증진 및 복지시설의 운영지원
4. 여성·아동 복지법인 및 후생시설의 운영·지도감독
5.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육 지원 업무

6. 평생학습 업무
7. 정선장학회 운영업무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8조(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행정 종합계획 수립·조정
2.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업무
4. 장애인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의 운영·지도 감독
5.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 업무
6. 노인·장애인의 복지업무
7. 공설묘지·납골당의 운영 및 장사 등 업무
8. 보훈업무
9. 경로당, 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의 관리 운영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9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제도의 개선 및 시책 추진
2. 민원접수 및 이송
3. 창구 민원처리, 사전심사청구 관리 운영
4. 지적조사·측량, 지적공부 등록·보존관리
5. 지적측량업 지도관리
6. 부동산 거래관리
7.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및 관리
8. 지리정보 구축 및 관리
9. 공간정보관련 업무
10. 토지의 조사 및 등록(지적복구·신규등록 등을 포함한다)
11. 가족관계·주민등록 및 인감사무 관리
12.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0조(환경산림과)** 환경산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보존 종합계획 수립·시행
2. 맑은 물 보전종합계획 수립·시행
3. 환경영향평가 지도
4.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관리

5. 기후변화 대응 업무 총괄
6. 생태경관 및 습지보호구역 관리
7. 청소행정·폐기물관리
8. 환경미화원 총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9. 산림기본계획수립 및 조림·육림 업무
10. 산림농업 및 임업후계자 육성·지원
11. 균유림 및 산지이용 업무
12.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업무
13. 산림 내 토석채취, 산지전용 및 복구지도
14. 그 밖에 산림관리 등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1조(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농정종합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 농지관리
4. 농업인 및 그 단체 육성·지도·관리
5. 농촌관광·휴양사업 개발 및 지원
6. 식량작물 생산대책 및 지원관리
7. 양곡관리
8.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 업무
9. 직접지불제 및 농업안정자금의 지원
10.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12. 축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가축 개량증식 및 양축농가 육성 업무
14. 가축 사양관리 및 방역기술 지도
15. 내수면어업 및 가축방역 업무
16.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2조(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관광·문화예술 종합기획 조정
2. 종합관광계획의 수립·시행
3. 관광개발 및 관광홍보 업무
4.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 지도단속
5. 관광지 관리

6. 아리랑의 계승 보전 업무
7. 도서관 지원 및 활성화
8. 문화재 관리에 관한 사항
9. 문화예술단체 육성지도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3조(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상공, 특수지역개발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2. 지역경제 활성화
3. 계량기에 관한 업무
4. 시장관리, 물가조사 및 정찰제 실시 업무
5. 노동조합 관리 및 체불임금 업무
6. 실업대책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
7. 공산품 품질관리 및 담배소매 업무
8. 광공업 등록 및 중소기업 육성지도
9. 농공단지 조성 및 육성지도
10. 지하자원 관리 및 광업진흥 업무
11.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
12. 개발촉진지구·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3. 폐광지역개발사업 관련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업무
14. 에너지에 관한 업무
1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4조(안전건설과)** 안전건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안전총괄 및 안전문화에 관한 업무
2. 사회안전·재난대책의 수립 및 집행
3. 풍수해 등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
4. 특별사법경찰관 업무 전반
5.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업무
6. 재난대비 교육, 안전점검 및 지도
7. 하천·소하천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전문건설업 등록업무
9.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관리
10.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5조(도시건축과)** 도시건축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경관조성 및 명품도시 육성
2.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3. 군 기본계획의 수립
4. 국토이용에 관한 업무
5. 읍·면 소재지 정비사업의 수립 및 시행
6. 군 계획시설의 입안 및 사업계획 업무
7.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8. 공원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9. 광고물 관리
10. 건축에 관한 업무
11. 주택에 관한 업무
12. 군 임대 공동주택 관리
13. 교통행정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
14. 교통·운수 조정업무
1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6조(동계올림픽지원단)** ① 동계올림픽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행사 및 대회지원
2.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대회시설 사업지원
3.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계획 및 관리
4.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추진 업무
5. 체육진흥 및 시설물 설치 관리
6. 생활체육 활성화시책 추진업무
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제17조(규제개혁추진단)**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등 규제개혁 종합 추진
2.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3.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 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4. 행정제도 개선업무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18조(설치)** ① 군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 농민교육훈련사업, 연구개발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46-7에 둔다.

**제19조(소장 등)** ① 센터에는 소장을 보좌하는 과와, 과에는 과장을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과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관장사무 및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과장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소관사무)** 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농업인단체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강소농 육성, 농업인 전문교육 및 농업경영 업무
4.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
5.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업무
6. 식량작물 재배·생산 등 기술지도
7.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8.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9.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 추진
10. 과수재배 기술지도 및 교육
11.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12. 축산기술 시범사업, 곤충산업 육성 및 기술지도
1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21조(설치)** ① 군에 「지방자치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113조제1항,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군 의료 취약지역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소장 등)** ① 보건소는 소장을 보좌하는 보건지소에 지소장을,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속지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소장 및 보건진료원의 직급과 그 소관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서 정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지소는 제1항의 관장사무를, 보건진료원은 그 관할구역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사무를 각각 소관업무로 한다.

#### 제4장 수질환경사업소

**제24조(설치)** ① 군에 법 제114조에 따라 제26조에 따른 관장사무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질환경사업소를 설치한다.

② 수질환경사업소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정선로 1047에 둔다.

**제25조(소장)**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관장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6조(소관사무)** 수질환경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상·하수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관리운영
3. 상수원보호구역 및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4. 맑은 물 보전종합계획 소관사무 시행
5. 수질검사 및 관리
6. 지하수 관리
7.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및 쓰레기 매립장 관리 운영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소관업무

#### 제5장 읍·면

**제27조(설치)**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읍·면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8조(읍장·면장)** 읍장·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그 관장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9조(직무)** 읍장·면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1.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
2. 민원서류 발급
3. 리·반 조직운영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지방행정의 기초업무

### 제6장 읍·면 출장소

**제30조(설치)** ① 읍·면에는 법 제106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편의행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2조의 사무를 관장하는 읍·면 출장소(이하“출장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소장)**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읍장·면장의 명을 받아 관장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방위 업무
2. 가족관계·주민등록업무
3. 인감, FAX민원 및 제증명 발급 등 업무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규제개혁추진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동계올림픽지원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 생태환경과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산림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②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③ 「정선군 군립공원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하고,“산림정책 과장”을 삭제한다.

④ 「푸른정선21실천협의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⑤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별표 4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⑥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산림정책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⑦ 「정선군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상하수도사업소장”을“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⑧ 「정선군 지하수관리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상하수도사업소장”을“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1]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21조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정선군보건소	정선읍 녹송로 33	정선군 일원
고한사복지소	고한읍 물한리길 10	고한읍, 사북읍 일원
신동읍지소	신동읍 의림로 313	신동읍 일원
화암면지소	화암면 그림바위길 57	화암면 일원
남면지소	남면 별어곡1길 59	남면 일원
여량면지소	여량면 서동로 2885	여량면 일원
북평면지소	북평면 북평6길 34	북평면 일원
임계면지소	임계면 송계8길 9	임계면 일원
용탄보건진료소	정선읍 가리왕산로 290	정선읍 용탄1~3리, 회동1~2리
광하보건진료소	정선읍 망하길 87	정선읍 광하1~2리, 굴암리, 가수리
조동보건진료소	신동읍 새골길 30	신동읍 조동1~9리, 방제1~2리
고성보건진료소	신동읍 창말길 26	신동읍 고성1~2리, 덕천리, 운치1~3리
호촌보건진료소	화암면 풍촌1길 12-6	화암면 몰운1~2리, 호촌리, 건천리
증산보건진료소	남면 무릉3로 12	남면 무릉1~5리
광락보건진료소	남면 광락로 46	남면 낙동1~3리, 광덕1~2리
구절보건진료소	여량면 구절양지말길 28	여량면 유천1.3리, 구절1~3리
도전보건진료소	임계면 눈꽃마을길 184	임계면 가목리, 도전1~2리, 직원1~2리
반천보건진료소	임계면 반천고양로 796	임계면 반천1~2리, 고양리, 여량면 봉정리
문래보건진료소	임계면 백두대간로 312	임계면 문래1~3리, 덕암리, 용산2리

[별표 2]

출장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30조제2항 관련)

출 장 소 명	위 치	관 할 구 역
신동읍 함백출장소	신동읍 새골길 30	신동읍 조동리, 방제리

## 개 정 이 유

-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군정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지역경제에 활력과 여성·청소년 복지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 부서별 업무 조정 및 이관에 따라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하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본청에 두는 실·과·단을 규정(안 제3조)
- 본청 실·과·단장의 분장사무를 규정(안 제4조~제16조)
- 본청 규제개혁추진단의 분장사무를 규정(안 제17조)
- 직속기관의 소관사무를 규정(안 제20조, 제23조)
- 사업소의 소관사무를 규정(안 제26조)
- 읍장·면장의 직무사항을 규정(안 제29조)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396호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0조에 따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72명”을 “58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573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

제3조제2항 중 “정원책정기준”을 “정원 책정기준”으로 한다.

제5조 중 “포함)”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①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중 6명(동계올림픽 한시 정원)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규제개혁추진단 한시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별표 3]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84	584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559	559				
4급	1	1				
4급·5급	3	2		1		
5급	24	11	2	1	1	9
6급 이하 계	530	530				
전문경력관 계	1	1				
연구직 계	4	4				
연구관						
연구사	4	4				
지도직 계	20	20				
지도관	3			3		
지도사	17	1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제30조에 따라----- ----- ----- 정함----- -.</p>
<p>제2조(정원의 총수)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7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561명</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p>	<p>제2조(정원의 총수) ----- ----- ----- 584명----- -----.</p> <p>1. 집행기관의 정원: 573명</p> <p>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1명</p>
<p>제3조(정원 책정기준) ① (생략)</p> <p>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제3조(정원 책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정원 책정기준----- -----.</p>
<p>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직렬별 정원) ----- ----- ----- 포함한다)----- -.</p>

개 정 이 유

- 2014년 안전행정부 승인 통보된 증원 12명을 반영하여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과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등에 대한 인력 확충으로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 572명 → 584명(증 12명)
  - 집행기관의 총수 : 561명 → 573명(증 12명)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1명(변동사항 없음)
-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별표 3)

「정선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 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397호

## 정선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시험수당지급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등에 대한 시험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기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시험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은 해마다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은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한 시험위원·관리관 및 편집요원과 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지급제외)** 군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여비)**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 등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시험위원·시험관리관·시험편집요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 시험수당 지급 기준을 국가시험의 수당지급에 준하도록 규정(안 제2조)
- 시험수당 지급대상 규정(안 제3조)
- 시험수당 지급의 제한 규정(안 제4조)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398호

###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인재의 발굴·육성·지원을 위하여 정선군인재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인재 육성사업의 원활한 지원과 중요 시책에 대한 문제를 협의 도출하기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인재육성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2. 인재 발굴·육성·지원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맞춤형 교육 공모사업 심사
4. 그 밖에 인재 발굴·육성·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

과장, 동계올림픽지원단장과 정선군교육지원청의 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정선장학회 이사, 정선군 초·중·고 학교장 대표, 정선군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및 정선군학부모회연합회장 등 인재육성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자, 서기는 관련 업무주무관이 된다.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등 사회적 지탄 대상이 되어 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5. 위촉될 때의 자격을 그 이후 상실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전 심의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정선장학회와의 협력)**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는 위원회가 제시하거나 제안하는 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력하거나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제안 등)** 위원회는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시책을 정선군 소속 교육 관련 위원회에 제안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 정 이 유

- 정선군 인재의 발굴·육성·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인재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위원회 설치 규정(안 제2조)
- 위원회 기능 규정(안 제3조)
  - 인재육성에 관한 기본 시책 및 계획, 인재 발굴·육성·지원 및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맞춤형 교육 공모사업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규정(안 제4조, 제5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당연직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과 교육지원청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정선군의회 의원, 정선장학회 이사, 정선군 초·중·고 학교장 대표, 정선군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 및 정선군학부모회연합회장 등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
- 정선장학회와의 협력(안 제10조)
  - 재단법인 정선장학회는 위원회가 제안하는 인재 육성사업에 대하여 협력하거나 반영하도록 노력
- 정선군 소속 교육관련 위원회에 제안 및 협조 요청(안 제11조)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399호

##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15퍼센트”를 “20퍼센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정선교육청교육장”을 “정선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서식에 의거”를 “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9인”을 “1명을 포함한 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선군의 관계 실·과장 2명
2.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4. 학부모 등 민간인 2명

제7조제4항 중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8조제1항 중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를 “그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 유고시”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당해”를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정기회와 임시회”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기회”를 “정기회의”로, “임시회”를 “임시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회고”를 “회의를 시작하고”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u>의하여</u> 정선군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따라</u> ----- ----- ----- ----- ----- -----.</p>
<p>제3조(보조기준액 등)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u>군세수입액</u>(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u>15퍼센트</u>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제3조(보조기준액 등) ----- ----- ----- ----- ----- ----- <u>20퍼센트</u> ----- -----</p>
<p>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u>정선교육청 교육장</u>(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의 장(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u>서식에 의거</u> 군수에게 일괄 제출하되,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단위사업별 세부계획을</p>	<p>제4조(보조금의 신청) ① <u>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u> ----- ----- ----- ----- <u>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를</u> ----- ----- -----</p>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략)

5. 기타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 관계 실·과장 2인,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 공무원 2인, 민간인(또는 학부모) 2인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

제6조(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  
----- 1명을 포함한 9명  
-----.

② -----  
-----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정선군의 관계 실·과장 2명
- 2.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명
- 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 4. 학부모 등 민간인 2명

④ -----  
--- 있다. 다만,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 그 업무를 총괄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이 된다.

②·③ (생략)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한다.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

제9조(간사) ① -----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회의) ① -----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② 정기회의-----  
----- 임시회의-----  
-----.

③ -----  
-- 회의를 시작하고-----  
-----.

제11조(수당 등) -----  
-----  
-----  
----- 범위-----  
-----.

개 정 이 유

-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공교육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군세수입액(세외 수입 제외)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 조정(안 제3조)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400호

##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제27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교육 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교육비 부담 경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고등학생”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 2. “중·고등학생”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 3. “교육비”란 고등학생의 학부모(그 외의 보호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강원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
  - 나. 가목 중 같은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
- 4. “교복”이란 학부모가 구입하여 중·고등학생이 착용하는 해당 학교의 「학교생활규정」에서 정한 복장을 말한다.
- 5. “교복 물려주기”란 졸업생이 후배 학생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교복을 기증하는 학교 내 자체사업을 말한다.

## 제2장 교육비

**제3조(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고등학생의 교육기회 균등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3조에 따른 교육비 지원대상은 고등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금액)** 제3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해마다 예산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

② 군수는 교육비를 분기별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7조(신청 및 지급)** ①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등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육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8조(반납)** 교육비를 지급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고등학생의 전학·퇴학 또는 자퇴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제3장 교복구입비

**제9조(지원)** 군수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중·고등학생의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교복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 제9조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중·고등학생 중 신입생(이하 “신입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지원금액)** 제9조의 지원 사업에 대한 교복구입비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신입생에 대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한다.

② 군수는 교복구입비를 신입생의 입학 전에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13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입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검토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학생의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한다.

**제14조(반납)** 교복구입비를 지급받은 해당 학교의 장은 교복구입비 지원 후 제1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중복 지원받은 경우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교복 물려주기 등)** 중·고등학생 해당 학교의 장은 환경보전, 물자절약 등 친환경 교육의 실천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그 학교 내 자체사업으로 교복 물려주기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정선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신청학생 인적사항**

학 교 명		학년 / 반	학년 반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가 족 사 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직 장	비 고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른 교육비 수혜여부 확인 (해당란에 “○” 표시)

일부지원	수업료 ( )	입학금 ( )	학교운영지원비 ( )	수혜없음	
------	---------	---------	-------------	------	--

「정선군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학생 (인)

학부모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학생, 학부모) 1부

[별지 제2호서식]

정선군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검토조서  
(제7조제2항 관련)

(○○고등학교)

연 번	신청 학생 인적사항				지원 적합 여부	법령 조례 등에 따른 수혜 여부 확인 (해당란에 "○"표시)		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육비 지원 예상액(원)				비고
	성 명	학년반	생년월일	주 소		일부 지원	수혜 없음	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적 합 부적합							

확인자 : ○○ 고등학교장    ○○○ (인)





제 정 이 유

- 정선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육여건의 기회 균등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비 및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가.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군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안 제3조~제5조)
- 교육비는 분기별로 해당 학교장에게 일괄 지원(안 제6조)
-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교육비 중복지원 등에 따른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 군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안 제9조~제11조)
- 교복구입비는 입학 전에 해당 학교의 장에게 일괄 지원(안 제12조)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3조)
- 교복구입비 중복지원 등에 따른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 학교 내 자체사업으로 교복 물려주기 등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5조)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401호

##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주요 생산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을 말한다.
- 2.“최저가격”이란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농산물가격을 말한다.
- 3.“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 4.“생산비”란 농산물 생산에 투입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를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 5.“계통출하”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내 농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 6.“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 7.“생산자조직”이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지역농협과 법인등록기관의 등록을 필한 조직을 말한다.

## 제2장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및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 선정
  2. 최저가격 결정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 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1. 지원대상 농가 및 생산자조직(이하 “농가 등”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2. 농업관련 단체 대표 6명
  3. 정선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4. LH농협은행 정선군지부장
  5. 정선·예미·여량·임계 농업협동조합장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과 제4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업마케팅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정기회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한 차례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

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 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제3장 최저가격 지원

**제8조(지원대상)** ①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산물은 군내에서 재배한 농산물 중 농업인 관련단체 대표 및 지역농협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농산물로 한정한다. 다만, 군수는 선정된 지원대상 농산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영농은 제외한다.

② 최저가격 지원대상 농가 등은 신청일 현재 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품목마다 99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 재배한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통출하를 한 농가 등으로 한다.

**제9조(지원신청)**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원을 부담한 지역농협의 장은 농가 등을 대표하여 계통출하 증명서를 첨부한 차액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지원 및 정산)**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농협의 장에게 차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지역농협의 장은 해당 지원금을 지원대상 농가 등에 정산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장 지원방법

**제11조(생산비·최저가격 결정)** ① 생산비는 최근 3년간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율을 참고하고, 최저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가격과 전국 도매시장의 농산물가격의 1년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도매시장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가 없는 품목은 농가 등 및 지역농협과의 품목별 계약가격을 최저가격으로 한다.

**제12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최저가격을 해마다 군보에 고시하고 군 인터넷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게재해야 한다.

**제13조(차액 지급기준)** 차액 지급기준은 지원대상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10일 이상 최저 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 상한선 이내로 한다.

**제14조(재원 마련 등)** ① 군수는 최저가격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 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농산물 가격폭락에 신속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만, 재원규모는 시장상황, 재배면적의 변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각각 부담하여 마련할 수 있다.

1. 군: 90퍼센트
2. 지역농협: 10퍼센트

**제15조(재원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차액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원의 수입 및 지출
2.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장 보칙

**제16조(환수)** ① 군수는 농가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차액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지원금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등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군수는 최저가격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그 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할 수 있다.

제 정 이 유

- 정선군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해제, 회의참여 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제7조)
- 지원대상과 지원신청, 지원 및 정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10조)
- 생산비 및 최저가격 결정과 고시, 차액 지급기준, 운용재원 마련과 재원의 운용계획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제15조)
- 지원금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 본 조례의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안 제18조)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402호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정선군 지역주민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민간운영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 운영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와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 및 대출
2. 강연회·독서회 등 문화 활동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 주민(이 조례에서 “지역주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설치 및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간 및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지역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속적 운영 관리가 가능한 장소로 특히, 어린이·노약자·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을 것
2. 지역의 공동시설 안에 설치될 경우 그 시설의 업무시간 외에도 개방에 어려움이

없을 것

**제6조(설치기준)** 작은도서관은 그 등록을 위하여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각 호의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와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할 것
2.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일 것

**제7조(등록 및 폐관)**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제6조의 설치기준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등록신청서가 등록요건에 부합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그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폐관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등록 해지)** ①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 등록된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유지 또는 독서문화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설치기준 및 등록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폐관 등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제9조(운영자의 직무)**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전반적 기능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2. 사서자격증 소지자 또는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 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3.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4.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시간 등)**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 5일 이상 개관
2. 1일 4시간 이상 개관. 다만,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② 운영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은도서관을 임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휴관 5일 전까지 해당 일자 및 사유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제11조(보관자료의 이관·폐기)** ①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보관자료를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으나 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자료의 폐기범위는 연간 전체 장서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 구입량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비, 인건비 및 그 밖에 운영경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운영자는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와 함께 별지 제6호서식의 작은도서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그 대상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 ④ 운영자는 재정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을 이전 또는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비품, 자료 등을 이전 또는 폐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⑤ 작은도서관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운영사항 등 평가)** ① 군수는 등록된 작은도서관 대하여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운영사항 등을 평가해야 한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자에게 운영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군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2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해당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문서로 그 요구를 하고 해당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표창)**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작은도서관과 군수가 이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작은도서관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설립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 다음 사항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첨부서류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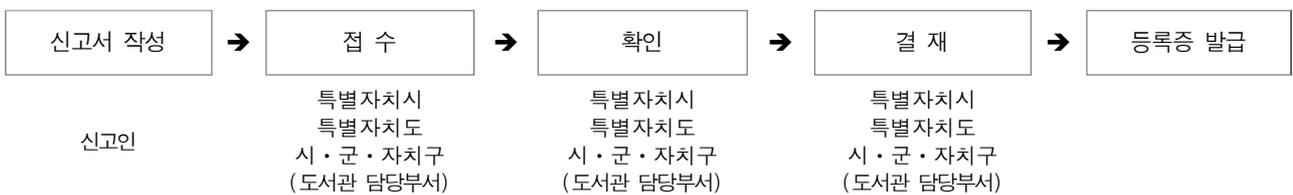
297mm×210mm[백상지 80g/㎡]

(뒤 쪽)

작성 방법

설립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성명란에는 법인·단체의 명칭을 적고, 생년월일란에는 법인·단체의 설립 연월일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별지 제2호서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작은도서관 시설명세서

(제7조제1항 관련)

명 칭			
도서관의 종류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	명
시 설	부 지	면 적	m <sup>2</sup>
	건 물	면 적	m <sup>2</sup>
		용도별 면적	m <sup>2</sup>
	열 램 석	좌 석 수	석
		열 램 실 별 좌 석	
	기계 · 기구		
자 료	도 서	권	
	연속간행물	종	
	비도서자료	종	
	그 밖의 자료		
직 원	전체인원	명	사 서 명
			일반직원 명

297mm×210mm[백상지 80g/ m<sup>2</sup>]

[별지 제3호서식]

2000년도 00작은도서관 운영계획서  
(제7조제1항 관련)

I. 운영목적 및 방침

- 
- 

II. 일반현황

1. 시설현황

주 소				연락처	전화/휴대폰
면적(m <sup>2</sup> )	도서관면적	부지면적	건물연면적	시청각실	기타

2. 직원현황

구 분	성 명	연락처	비 고
운영자			
자원봉사자			

3. 도서현황

구 분	도서	비도서	시청각자료	기 타
단위 : 권(수)				

4. 운영예산

구분(년도)	인건비	도서 및 자료구입비			기타운영비
		자체	군 지원	기타	

Ⅲ. 운영계획

1. 도서관 운영

1) 운영시간 : ○요일 ~ ○요일, 오전 ○○시 ~ ○○시

※ 도서관별로 정함. 단 주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2) 도서 대출 및 반납

- 도서대출 및 반납 규정을 정한다.
- 이용자, 대출권수, 대출일, 반납 및 기타 사항 등
- 도서 대출 및 반납시 필요한 사항을 추가
- 도서 대출 및 반납 대장을 비치

※ 도서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간이며, 대출도서는 1회 3권 이내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정가능

※ [붙임 1] 도서 대출 대장 작성·비치

3) 도서 확충

※ 도서 구입 및 정리에 관한 계획을 작성

4) 운영예산 집행 계획

※ 해당연도 운영예산에 대한 집행계획을 작성

2. 주요업무 계획

월 별	주 요 업 무	비 고

※ 도서관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하게 작성하며 도서관 운영, 행사, 프로그램 계획, 그 밖의 사항 등을 작성

## 3.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계획

행사 및 프로그램	주요 업무	비고
소모임활동	•	
독서캠프	•	
작은도서관협의회 운영회의	•	
찾아가는 도서관	•	
책 축제	•	
도서관학교	•	
한 마을 한 책 읽기	•	

※ 작은도서관협의회 사업계획서 서식을 참고하거나, 개별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주요 행사 및 프로그램 계획을 자유롭게 작성

## IV. 기대효과 ※ 작은도서관 운영에 따른 기대효과를 자유롭게 작성

- 
- 

※ 참고 : 운영자는 해마다 도서관 운영에 관한 세부사업 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

제 호

**작은도서관 등록증**  
(제7조제2항 관련)

1. 도서관 명칭 :

2. 소재지 :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4. 등록 연월일 :       년       월       일

5. 도서관의 종류 :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등록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정 선 군 수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별지 제5호서식]

**작은도서관 폐관신고서**  
(제7조제3항 관련)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도서관의 종류	작은도서관		
등록번호	제 호	등록년월일	
설립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사유			폐업일

「정선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작은도서관 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서식을 작성합니다.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의 폐업신고**

사업자	도서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한 사업자가 위 내용을 작성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폐업신고 한 것으로 보아 관할세무서에 폐업사실을 송부합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뒤 쪽)

첨부서류	1. 작은도서관 등록증 원본( 별지 제4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원본 (폐업신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포괄 양도·양수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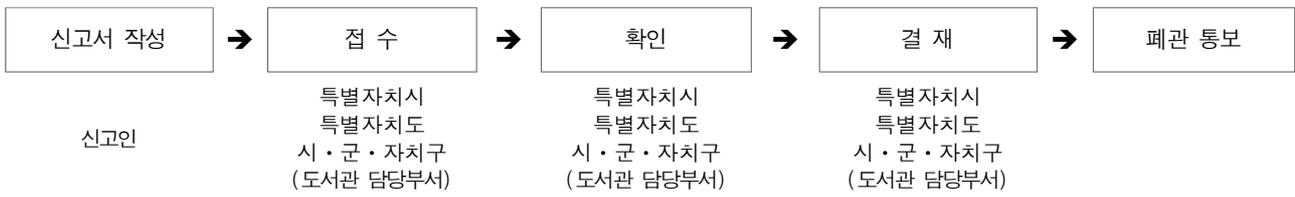
**작성방법**

설립자가 법인 · 단체인 경우 법인 · 단체의 명칭을 적습니다.

**유의사항**

폐업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과 잔존재화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처리절차**



297mm×210mm[백상지 80g/㎡]



제 정 이 유

- 관내 기 운영중인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기능 규정(안 제1조~제3조)
- 작은도서관 설치기준 및 등록·폐관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제7조)
-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작은도서관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작은도서관 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제14조)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403호

##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여한 군 장병에 대한 사기양양 대책으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

제5조제2항제1호 중 “해당년도”을 “해당 연도”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 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lt;신 설&gt;</p>	<p>제2조(정의) ①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모범장병”이란 각종 행사지원, 수난 구호, 민방위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활동, 농촌일손돕기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장병을 말한다.</u></p>
<p>제4조(지원사업)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 장병 및 군부대 등의 복지증진과 군에 애정을 둘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u>모범 장병 및 제대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u></p> <p>3. ~ 5. (생 략)</p>	<p>제4조(지원사업)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모범장병 및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여한 군 장병에 대한 사기양양 대책으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u></p> <p>3.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p>	<p>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다.</p> <p>1. <u>해당년도</u> 사업계획과 전년도 성과의 결산</p> <p>2. 3. (생략)</p>	<p>1. <u>해당 연도</u>----- -----</p> <p>2. 3. (현행과 같음)</p>
--	---

**개 정 이 유**

- 안 제4조의2의‘모범장병’의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군수가 상기 조례 근거로 모범장병을 지원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음.
- 따라서,‘모범장병’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불필요한‘제대예정 장병’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자 개정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군 장병 등 지역주둔 군부대 지원조례」 제4조의2 “모범장병 및 제대예정 장병을 대상으로 관내 관광지 탐방 및 체험”에서 제대예정 장병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모범장병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대상을 확대 하고자 조례일부개정을 추진 함.

「정선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404호

## 정선군 농가경영기록달력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제작·배부함으로써,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농업인 등”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 또는 소재중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농지법 시행령」 제3조의 농업인
2.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및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5호의 생산자단체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
4. 군에 등록된 농업관련 단체
5. 귀농귀촌 희망자 및 영농 의향을 가진 사람

**제3조(제작 및 배부)** ① 정선군수는 농가경영기록달력(이하“달력”이라 한다)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제작·배부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 ① 달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달력 배부는 우편발송 또는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군 로고 및 군(농업기술센터) 명칭

- 2. 영농전문기술교육 및 주요 작목별 영농추진 일정
- 3. 주요 작목별 농약혼용 가부표
- 4. 영농기술 상담, 농업기계 임대사무소 및 순회기술교육 전화번호
- 5. 친환경농업관리실 및 친환경미생물배양센터의 이용방법과 전화번호
- 6. 영농현장 기술지원 사진 또는 관내 문화·관광·유적지 사진
- 7. 그 밖의 영농에 필요한 자료 등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연중 영농상황을 알 수 있도록 농가경영기록달력을 제작·배부하여 순기별로 적기영농이 이루어져 농업인 소득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

주 요 내 용

- 농가경영기록달력 제작 및 배부사항 규정(안 제3조)
- 농가경영기록달력 배부대상 등 규정(안 제4조)
- 농가경영기록달력 게재사항 규정(안 제5조)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조례 제2405호

###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를 “정선군 지하수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발·이용하는 자”를 “개발·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을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으로, “신고시”를 “신고를 할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이 정하는”을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정한”으로, “예치하여야”를 “예치해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상수도 미보급지역 중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를 말한다)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농·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음용수로 하는 경우

2.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펜션, 음식점, 그 밖의 영업을 말한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를 “전 항목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제8조의 제목“(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를 “관한”으로, “지하수관리 위원회”를 “지하수관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변경에 관한 사항”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을 “오염지하수정화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의 제목“(위원회 구성)”을“(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포함한”을 “포함하여”로, “군수”를 “부군수”로, “호선한다”를 “서로 뽑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9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제3항 본문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원이 질병”을 “질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위원이 품위”를 “품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제11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적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지하수업무담당으로 하고”를 “지하수업무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2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8호”를 “제8호까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4호”를 각각 “제4호까지”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때”를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회전으로 인하여”를 “공회전으로”로, “부과된 때”를 “부과된 경우”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을 “않은 경우”로, “100분의3에 상당”을 “100분의 3에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상당”을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2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76조 부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부터”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를 “별지 제2호서식의”로 한다.

제25조 단서 중 “2이상인”을 “둘 이상인”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기한 자”를 “제기한 사람”으로 한다.

제28조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검사 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한 수질 검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수질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수수료를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 지하수관리 조례</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지하수개발·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u>자와 매매·양도 또는 상속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 받은 자</u>를 말한다.</p> <p>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지하수를 <u>개발·이용하는 자</u>에게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p> <p>3.·4. (생략)</p> <p>제5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p>	<p><u>정선군 지하수 관리 조례</u>                      제2조(정의) -----                      -----.</p> <p>1. -----                      -----                      -----                      -----                      ----- <u>사람과</u>                      -----                      ----- <u>사람</u>                      을 -----.</p> <p>2. -----                      -----                      -----                      ----- <u>개발·이용하는 사람</u>-----                      -----.</p> <p>3.·4. (현행과 같음)</p> <p>제5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p>

· 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시 예  
치하는 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  
이 할 수 있다.

1. 2. (생략)

② 이행보증금은 영 제22조에  
따른 현금이나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이 정하는 보증서 또는 유  
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  
다.

제6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군  
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  
29조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  
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  
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의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  
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  
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3. (생략)

<신 설>

----- 신고를 할 때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 정한 -----  
-- 예치해야-----.

제6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  
-----  
-----  
-----  
-----  
-----  
-----.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  
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 고  
시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3.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상  
수도 미보급지역 중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

<신 설>

제7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지하수개발·이용자는 준공확인필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는 기간 마다 수질검사 전문 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

는 지하수에 대하여는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를 말한다)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농·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음용으로 하는 경우
- 2.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펜션, 음식점, 그 밖의 영업을 말한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및 재검사 수수료

제7조(수질검사의 주기) ① -----  
-----  
-----  
-----  
-----.

- 1. 음용수: 2년. 다만 1일 양수능

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규칙 제11조에 따른 지하수 수질기준의 100분의 70 이하이고,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하여는 수질검사의 주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할 수 있다.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 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생략)

제8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선군 지하수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군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 심사에 관한 사

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현행과 같음)

② -----  
----- 전항목이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  
-----  
-----.

1. 음용수: 3년, 다만, 1일 양수 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5년

2.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  
-----  
-----관한-----  
-----지하수관리위원회-----  
-----.

1. -----  
----- 변경

2. -----  
----- 심사

항

-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 5. 그 밖의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 2. 군 소속 공무원
- 3.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 3. -----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
- 4. ----- 오염지하수정화계획
- 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 포함하여 -----  
----- 부군수-----  
----- 서로 뽑는다.

②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 1. 지하수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 3.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

또는 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관련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정선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5. 군 소속 공무원

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  
-----  
-----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 -----.

1. 질병-----  
-----

경우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⑤ (생략)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각종위원회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제8조제2호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는 경우 조

-----

2. 품위-----

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재적위원-----  
-----.

④ -----  
-----  
-- 지하수업무담당이-----  
-----  
--.

⑤ (현행과 같음)

⑥ -----  
-----  
----- 범위에  
서-----.

제12조(지하수영향조사 심사방법) -----  
-----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때

3. (생략)

제20조(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경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가산금 등) ① 군수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 100분의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군(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

2. -----  
--- 공회전으로-----  
----- 부과  
된 경우

3. (현행과 같음)

제20조(누수로 인한 부담금 경감)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  
람은 -----  
-----  
-----.

제21조(가산금 등) ① -----

-----  
-- 않은 경우-----  
----- 10  
0분의 3에 해당-----  
-- . -----  
-----  
-----.

② -----  
-----  
-----  
----- 해당-----  
-----  
-----  
-----.

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3조(과오납금의 처리) 과오납금에 대한 충당 또는 환급 및 환급이자율, 환급이자 기산일 등은 「지방세기본법」 제76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다.

제2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 및 납부

-----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람이 -----  
-----  
-----.

제22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 ---  
-----  
-- 사람은 -----  
-----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과오납금의 처리) -----  
-----  
----- 「지방세기본법」 제76조부터 -----  
-----.

제24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  
-----  
-----  
-----  
-- 별지 제2호서식의-----  
-----

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급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 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50퍼센트를 더하여 부과한다.

제27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 둘 이상인 ----

-----  
-----.

제27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 ----- 사람  
은 -----  
-----  
-----.

② -----  
-----  
-----  
-----  
----- 제  
기한 사람-----  
-----  
-----.

제28조(과태료의 강제징수) ----

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7조제1  
 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하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  
 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강제 징수한다.

----- 사람이 -----  
 -----  
 -----  
 -----  
 -----  
 -----.

### 개 정 이 유

- 상위법령인 「지하수법」 개정분을 반영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2년마다 1회 수질검사를 받는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지하수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서 음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 수수료 총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안 제6조제2항)
- 지원대상은 상수도 미보급지역 가정용(음용수)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람에 한정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 생활용수로 허가·신고 후 농·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그 일부를 음용으로 하는 경우
  - 가정용 음용 외에 영업(펜션, 음식점, 그 밖의 영업을 말한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준공검사와 관련된 수질검사 및 채검사 수수료
-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장 변경(안 제9조제1항)
  - “군수” ⇒ “부군수”

# 규 칙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규칙 제1247호

###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을“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규정함”을“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지원금액)”을“(신청시기 및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3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급대상자 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을</u>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정함</u> -----.
제2조(지원금액) 정선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u>참전유공자 공로수당</u> : 매월 5만원 2. <u>사망위로금</u> : 15만원 <신 설>	제2조(신청시기 및 서식) ① <u>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u>  ② <u>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u>
제3조(신청시기 및 서식) ① <u>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공로수당 신청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u> ② <u>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사망위로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u>	<삭 제>
제4조 (생 략)	제3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신 설>

제5조(지급대상자 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지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발생 즉시 읍·면장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자 관리)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 명단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읍·면장은 지급대상자의 전출 및 사망 발생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개 정 이 유

- 같은 법 조례와 중복 표기된 내용을 삭제하고 전체적인 조문을 조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제2조(지원금액) 내용이 같은 법 조례 제4조(지원사업) 내용으로 기 표기 되었기에 중복내용 조문 삭제 및 전체조문 조정
- 별지 서식(제1호·제2호) 내용 일부수정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규칙 제1248호

##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 본청(실·과·단을 말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읍·면을 말한다)의 장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실장·과장·소장·단장은 부군수를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장 군 본청

**제3조(직급)** 본청 실장·과장·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한다.

1. 기획감사실장·자치행정과장: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2. 여성청소년과장·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3. 세무회계과장·문화관광과장·지역경제과장: 지방행정사무관
4. 민원봉사과장·안전건설과장·도시건축과장·동계올림픽지원단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5. 환경산림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6. 농업축산과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7. 규제개혁추진단장: 지방행정주사

제4조(분장사무) 실장·과장·단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농업기술센터

제5조(직급) 정선군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 두는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6조(하부조직) 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지원과 및 기술연구과를 둔다.

② 센터 과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기술지원과장·기술연구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제7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 제2절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제8조(직급) ① 정선군보건소에 두는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지방간호사무관·지방의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직렬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분장사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의 사무를 분장한다.

### 제4장 수질환경사업소

제10조(직급) 수질환경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1조(분장사무) 소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 제5장 읍·면

제12조(직급)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읍·면에 두는 읍장·면장은 다음과 같이 보한다.

1. 정선읍장·고한읍장·사북읍장·신동읍장·남면장·여량면장·북평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

2. 화암면장·임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복지사무관

제13조(분장사무) 읍장·면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제6장 읍·면 출장소

제14조(직급) 신동읍 함백출장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보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②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상하수도사업소장”을“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③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6호 중“산림정책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④ 「정선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하고,“기술지원과장”을“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

⑤ 「정선군 농특산물 품질보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산림정책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⑥ 「정선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도시교통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⑦ 「정선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제4항 중“기술지원과장”을“기술지원과장, 기술연구과장”으로 한다.

⑧ 「정선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상하수도사업소장”을“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⑨ 「정선군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상하수도사업소장”을“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 1]

## 본청업무분장표(제4조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감사실	1	군 행정 전반의 기획 및 조정 통제
	2	군정의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수립 ·평가 및 심사분석
	4	군정 운영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공약사항 실천관련 업무 전반
	6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7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8	군정보고서·군정백서의 작성 및 발간
	9	각종 지시사항 관리
	10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업무
	11	각종위원회 운영 및 정비 총괄
	12	군의회 운영지원 및 협의
	13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지역행복생활권 및 지역발전 특화·특구에 관한 사항
	15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총괄
	16	군정주요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7	예산편성 및 집행감독
	18	예비비 관리
	19	지방채발행,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사항
	20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2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2	지방교부세 관리
	23	재정분석 및 재정공시
	24	각종 기금의 총괄 관리
	25	투·융자,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6	경영수익사업 총괄
	27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총괄
	28	예산확정 고시 및 공개에 관한 사항
	29	감사기본계획 수립
	30	비위공무원 조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1	감사 및 직무감찰

	32	감사결과 보고, 처분지시와 감사처분사항 이행확인
	33	공무원징계의결 요구 및 훈계 처분
	34	면책 심의회 운영
	35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36	공직자재산등록사항에 관한 사항
	37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및 청렴도 측정
	38	명예감사관제 운영
	39	공직자 병역공개
	40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에 관한 사항
	41	군정홍보계획수립 및 시행
	42	언론 공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
	43	청내 방송시설관리
	44	홍보매체의 보급 및 육성
	45	군보 및 군정소식지 발간
	46	정선군 이미지개선화사업(CIP) 및 캐릭터 관리
	47	군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48	자치법규·행정규칙 등 중요문서의 심사
	49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50	자치법규의 발간 및 편찬
	51	법제사무 지도 및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52	소송사건의 총괄 및 조정,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53	행정심판 관련사무
	54	소청심사 관련사무
	55	시책발굴 업무 전반
	56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57	지역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사항
	58	기초 및 광역발전계획 수립
	59	시군 연계협력사업
	60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관리
	61	군정발전 정책개발 및 시책개발업무
	62	서울사무소운용, 강원도서울사무소·세종사무소연계업무
	63	전시공보계획에 관한 사항
	64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자치행정과	1	자치행정 사무의 총괄·기획 조정
	2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징계·집행에 관한 사항
	5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7	읍·면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
	8	선거관리 사무
	9	행정구역 조정에 관한 사항
	10	지방행정 동향 및 여론관리
	11	이·반장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관리
	13	새마을 지도자 관리, 새마을 운동 지원업무
	14	민주평통업무 지원
	15	행정사 및 소개영업 지도감독
	16	제도개선 업무
	17	자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8	일제강제동원피해신고에 관한 사항
	19	고객만족업무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0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관한 사항
	21	규제개혁 업무
	22	공무원 기부금품 모집 통제
	23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24	국·내외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에 관한 사항
	25	적십자회비 모금에 관한사항
	26	견문보고제 운영
	27	주민 반사회 운영
	28	인구 늘리기 시책 운영 총괄
	29	새마을 금고 인가 및 운영관리
	30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1	도정 상담위원 관리
	32	공인관리
	33	비밀취급 인가 관리
	34	각종 행사 의전관리
	35	통계조사(인구주택, 산업, 농업, 광공업, 사업체 기초통계 및 고용구조 조사)
	36	통계조사의 종합조정

	37	기본통계의 정비
	38	포상업무
	39	공무원 복무관리
	40	보안업무
	41	공무원 교육훈련 및 교양에 관한 사항
	42	해외 선진지 견학
	43	정부 3.0 업무
	44	국기 및 가로기 관리
	45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리 및 지원
	46	직원 복리증진 사무
	47	공무원 연금에 관한 사무
	48	비정규직 각종 보험에 관한 사항
	49	지방행정공제회 관련 사무
	50	직장체육 활동 지원
	51	공무원 동호회 지원
	52	국가 기반보호체계 업무에 관한 사항
	53	비상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54	주민신고망 조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5	인력동원 및 자원조사 관리
	56	전시대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 통제
	57	충무계획 조정·통제
	58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인도에 관한 사항
	59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60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61	통합방위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62	해외선진문화 기행 및 교류
	63	출향단체 관리 및 지원
	64	문서보존 통제 및 문서보존관리
	65	행정지도 발간
	66	정책실명제에 관한 사항
	67	정보화 시책에 관한 사항
	68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69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70	지역정보이용센터 운영
	71	군 홈페이지, 웹메일 운영관리

	72	온나라 시스템 운영관리
	73	본청 및 소속기관의 전산시설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74	전산보안업무 및 행정전자서명 관리
	75	지방행정전산화 계획 수립 및 시행
	76	주민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77	자체 전산교육에 관한 사항
	78	각종 전산프로그램 보급·운영
	79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유지보수 지원
	80	정보화 마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1	본청 및 소속기관의 통신시설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82	통신 보안관리
	83	전자정부 통합망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84	각종 통신회선의 통합관리
	85	행정전화 및 FAX(모사전송)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86	화상회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87	테이더 통신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88	정보통신검사 사용전 기술교육
	89	건축허가 관련 통신설계도서 검토
	90	무인당직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91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92	평시 병무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
	93	그밖의자치행정과소관에관한사항과다른실,과에속하지아니하는사무의조정
세무회계과	1	자금운용 및 자금운용 관리감독
	2	정선군 금고계약 및 지도감독
	3	자금배정 및 관리
	4	국·도비 보조금 수입관리
	5	채권 총괄관리
	6	지방세 징수실적 관리 및 세수추계
	7	지방세 전산수납 관리 및 과오납금 결정 처리
	8	지방세징 운영에 관한 사항
	9	세외수입 관리
	10	세무조사, 지방세 구제, 세무상담
	11	비과세 및 감면분 사후관리
	12	부동산 취득세 부과 징수
	13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부과 부과·징수

	14	지방세 전산에 관한 사항
	15	지방세 이의신청에 따른 조사결정 및 처리
	16	지방세 공시송달
	17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18	자동차세 부과·징수
	19	재산세 부과·징수 (주택분, 건물분, 토지분)
	20	주민세 부과·징수
	21	담배소비세 부과·징수
	22	종합부동산세 자료 지원
	23	재산조회에 관한 사항
	24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공시업무
	25	과세표준 고시업무
	26	지방세 체납관리
	27	지방세 영수증서 원부관리
	28	지방세 가산금 조정
	29	지방세 징수업무의 종합 조정·통제
	30	지방세 결손처분
	31	지방세 체납처분
	32	그 밖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3	공사·용역·구매 계약 체결
	34	물품 총괄관리(정수책정, 취득, 보관, 전환, 처분)
	35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 및 재물조사
	36	부정당업체 관리
	37	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38	세출예산 집행관리
	39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40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41	유가증권의 수납 보관
	42	급여관리
	43	일상경비 교부 및 정산서 심사
	44	복식회계 기본운영 사무 및 계획 수립
	45	자산관리
	46	통합재무제표 작성 및 자료·검증·수정·보완
	47	세입·세출복식부기회계처리 및 검증
	48	기초자산, 부채실사 및 기초가액평가

	49	복식부기회계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50	청사관리
	51	영조물 손해보험 가입
	52	관용차량관리
	53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등기에 관한 사항
	54	군유재산 총괄 및 관리
	55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 및 징수
	56	청사, 관사 및 청내소방시설의 유지관리
	57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여성청소년과	1	가족복지행정의 종합기획
	2	여성복지증진에 관한 계획수립 촉진
	3	여성결혼이민자 관리 및 지원
	4	여성단체육성 및 활성화 대책
	5	여성복지시설의 지도 감독
	6	여성 교육, 지원 및 권익증진
	7	여성회관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8	여성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9	성별영향 분석 평가
	10	여성단체 사업지원 관리
	11	여성 권익증진 사업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및 관리(외국인 업무)
	13	사회복지기금(여성발전계정) 관리 및 운영
	14	아이돌보미 사업에 관한 사항
	15	성폭력상담소 운영 요보호 여성 보호
	16	결혼소개업소에 관한 사항
	17	공립어린이집 수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18	영육아 보육료 책정 및 보육료 예탁금 관리
	19	유아학비 책정 및 관리
	20	보육시설 종사자 임면관리에 관한 사항
	21	저소득 한부모, 청소년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22	취학전 아동 가정양육수당 책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23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
	24	다자녀 자녀 고등학생, 대학생 학비지원에 관한 사항
	25	저출산 고령화 업무에 관한 사항

	26	청소년 장학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7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28	보육시설 신고·운영·관리 및 보육료 지원
	29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추진
	30	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 및 관리
	31	아동급식지원사업
	32	아동복지시설의 지도감독
	33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4	요보호아동 보호 관리
	35	요보호여성 선도보호
	36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7	청소년 수련시설 인·허가 및 수련활동 지원
	38	청소년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9	청소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40	드림스타트 서비스 기획 및 계획수립
	41	드림스타트 수행기관, 협력기관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에 관한 사항
	43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사항
	44	드림스타트 슈퍼비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5	드림스타트 신규아동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6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관한 사항
	47	요보호아동 생활안정 지원 및 입양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48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관한 사항
	49	희망의 연못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0	기초푸드뱅크 지원사업
	51	희망자람 교통비 지원사업
	52	사회복지기금(아동계정)관리 및 운영
	53	지역아동센터 및 대철베드로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
	54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5	향토인재 육성 및 인적자원 관리
	56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7	지역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58	정선 장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59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0	평생교육도시 지정에 관한 사항
	61	기타여성·아동·청소년복지 및 평생학습·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지원과	1	사회복지 시책의 수립 추진
	2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
	3	재해구호에 관한 사항(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 등)
	4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충훈탑 관리 및 현충일 행사
	6	진폐, 생활공감 정책에 관한 사항
	7	읍면 복지회관 운영 관리
	8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9	주민생활서비스 전산망 구축 및 관리
	10	의사상자 관리
	1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12	지방자치단체복지정책평가
	13	강원랜드복지재단 지도 감독
	14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및 관리
	15	사회복지기금 총괄 관리
	1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 책정
	17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관리
	18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운영
	19	북한이탈 주민관리
	20	자활센터관리
	21	자활근로사업 운영 관리
	22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 희망리본사업
	23	자활기금 사업
	24	의료기금 특별회계 운용
	25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관리
	26	행려(부랑인) 보호
	27	취약계층 상수도 사용료 감면
	28	희망복지 지원
	29	바우처 서비스
	30	제가급식지원 사업
	31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
	32	통합사례 관리 및 콜센터 운영

	33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34	긴급복지지원사업
	35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
	36	자매결연 및 후원사업
	3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38	명절 위문사업
	39	이웃돕기 및 성금모금
	40	전시수용계획수립·추진
	41	노인복지시설 등록 및 지원
	42	노인복지급여 지급 및 관리
	43	재가노인 시설 운영
	44	노인복지 기금운용
	45	노인회 지원 및 관리
	46	노인복지 증진 활성화 사업
	47	노인돌봄 서비스
	48	노인요양시설운영관리
	49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관한 사항
	50	장사업무 전반
	51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2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53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54	시니어클럽 운영 관리
	55	기타 노인복지 업무 전반
	56	장애인 단체 지원 및 관리
	57	장애인 복지급여 지급 및 관리
	58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사항
	59	장애인복지시설등록및지원
	60	기타노인·장애인·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민원봉사과	1	민원실 설치운영 및 민원공무원 복무기강 지휘 감독
	2	민원1회 방문처리 상황의 종합관리
	3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평가 및 시책보완·개선
	4	1회방문 상담창구 설치운영
	5	무인민원발급기 및 통합민원발급 시스템 운영 관리
	6	민원행정 전산화 추진(호적 등)

	7	인가·허가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점검지도
	8	민원불편 신고센터 설치운영
	9	복합 인·허가민원 전반에 대한 안내·상담
	10	민원사무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연구
	11	국민편의 시책개발
	12	각종 민원서류의 수발통제
	13	여권, 주민등록, 인감, 어디서나 민원, G4C 업무
	14	주민등록관리
	15	주민관리 전산업무 추진
	16	외국인·국내거소자·재외국민체류지 변경 및 관리
	17	토지의 조사 및 등록 (신규등록, 지적복구)
	18	토지이동에 따른 접수 및 정리
	19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20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관리
	21	지적측량 파일제공 및 관리
	22	지적측량 성과 검사
	23	지적확정 및 축적·지변변경에 관한 사항
	24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25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의 정리
	26	지적자료 전산화 사업
	27	부동산 관련 특례법 운영·관리
	28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29	지적공부의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30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31	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32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사항 조사
	33	부동산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34	부동산실명법 운영
	35	부동산 과세자료 정보제공
	36	개발이익환수제도 운영
	37	토지거래 허가관리
	38	부동산 중개업 등록 및 지도·감독
	39	비법인단체 등록번호 부여 및 관리
	40	토지 소유권 변동자료 정리·관리

	41	외국인토지관리
	42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43	부동산 소유권 관련 국가소송수행
	44	개인별 지적전산자료 제공(조상땅 찾기)
	45	지적공부 열람 및 발급
	46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47	건축물 대장발급
	48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9	공간정보 시스템 관리·운영
	50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구축·관리
	51	공간정보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52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고도화
	53	상세주소 부여·관리
	54	국가지점번호 설치·관리
	55	국가기초구역 공동활용 체계 구축·관리
	56	국토지리정보 관련 업무
	57	지적전산자료제공·관리
환경산림과	1	환경보전종합대책 수립·추진
	2	수계·권역별 수질관리 전반
	3	맑은 물보전종합대책 수립·추진
	4	환경보전 홍보 및 환경보전행사 추진
	5	토양오염원 관리 및 토양오염 방지대책 수립·추진
	6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안전진단 추진
	7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환특회계)
	8	공해방지
	9	환경신문고 운영
	10	군립공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동강전망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12	동강녹색 모험의 숲 개발사업
	13	동강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자연휴식지 관리
	14	동강 생태체험 학습지 관리
	15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동식물 관리에 관한 사항
	16	수렵장 운영에 관한 사항
	17	자연휴식년제 운영에 관한 사항

	18	환경경영시스템
	19	환경프로그램운영(공공기관배출권거래, 공공기관온실가스목표관리제)
	20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21	지방의제 21 그린스타트 관리
	22	환경단체 관리
	23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에 관한 업무
	24	수질오염사고 방제활동
	25	수질오염총량제
	26	수질측정망(지점) 관리
	27	생태하천 복원사업
	28	비점 오염원 관리
	29	특정토양관리대상 시설 인허가
	30	유해화학물질 관리
	31	실내공기질 및 라돈관리
	32	전시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3	공해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34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35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36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37	청소행정의 총괄
	38	환경미화원 총괄 및 조정관리
	39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관리
	40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 시행
	4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42	폐기물관리업무
	43	재활용분리수거 및 시책 추진
	44	음식물 폐기물 처리
	45	국토대청결 운동
	46	영농폐기물 수거관리
	47	석면관리종합정보망 관리
	48	석면 건축물 관리
	49	잔류성 유기오염물 신고 및 관리
	50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
	51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배출 신고

	52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단속
	5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54	생활악취 및 배출시설 관리
	55	조림사업 계획 및 실행
	56	숲 가꾸기 사업계획 수립 및 실행
	57	임업분야 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58	산림농업 및 임업후계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9	산림기본 통계조사
	60	산림경영계획 수립 및 실행
	61	입목벌채허가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62	채종림 관리 및 산림보호구역 관리
	63	임도사업, 사방사업
	64	산촌생태마을 조성
	65	산림재해대책, 산림사고 예방
	66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67	임산물 굴·채취 허가
	68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
	69	산림보호 단속
	70	산림병해충 예방·방제에 관한 사항
	71	등산로 조성·정비
	72	산불방지대책 수립·실행
	73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
	74	민등산 역사증식
	75	산림지리정보시스템 운영
	76	보호수 관리
	77	산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
	78	주요 도로변 꽃길조성 사업
	79	사방지 지정 및 해제
	80	임업진흥 권역 관리
	81	산림보호구역 관리
	82	공유 임야관리
농업축산과	1	농업·농촌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농정시책개발 및 통합조정
	3	농촌활력증진 및 농업인 복지향상통합 조정

	4	정부양곡 수급관리
	5	농촌관광 체험마을 조성·관리
	6	관광농원 및 민박시설지원·관리
	7	농촌현장 포럼운영
	8	농업경영컨설팅지원
	9	양곡관리특별회계 운영
	10	양곡 가공업자 지도관리
	11	향토산업 및 식품전략 육성사업
	12	귀농·귀촌지원 사업
	13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14	농업재해보험, 농업재해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정선군농업농촌발전안정기금 관리·운용
	16	농어촌진흥기금관리
	17	밭기반정비에 관한 사항
	18	경지정리사업
	19	한해대책
	20	수리시설 관리
	2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관리
	22	농업용 지하수 관리
	23	농업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4	문화마을, 휴양단지 관리
	25	농지전용 허가(협의)
	26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
	27	농업진흥지역 및 불법농지 관리
	28	개간지 허가
	29	농지정보화
	30	처분농지관리
	31	한계농지 및 영농조건 불리지역 관리
	32	생약종합유통센터 관리운영
	33	농특산물 직거래 등 농특산물 홍보 및 판로개척
	34	농특산물 상표, 지리적표시제 등록에 관한 사항
	35	저온저장고시설사업, 농산물집하장의설치 및 사후관리
	36	농산물 수출정책에 관한 사항
	37	농산물원산지표시 지도 및 안정성 조사

	38	농산물가공업체 지원·사후관리 지도
	39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농산물계약재배사업의 시행
	40	농업인 정보화교육
	41	농업직접지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
	42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43	농산물 원산지 표시관리
	44	농산물 선별장 지원사업
	45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46	농특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사업
	47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
	48	재해피해 농가 농경지 및 시설물 조사·복구
	49	농특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50	친환경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
	51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52	친환경 농특산물 생산, 유통지원(포장재 지원)에 관한 사항
	53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면세유 지원에 관한 사항
	54	농작물 병해충 방제 및 약제 지원에 관한 사항
	55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56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관리
	57	소형농기계 지원에 관한 사항
	58	종자업, 비료생산업, 농약판매업에 관한 사항
	59	야생동물 약제지원사업
	60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61	고랭지 비교우위대체작목 육성사업
	62	전업농 육성, 관리
	63	지역특화 소득원개발사업
	64	특산작물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5	과수, 원예분야 생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6	농산물 가공상품화 사업
	67	식량작물 재배, 생산지원
	68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
	69	가축인공수정소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0	축산업 등록에 관한 사항
	71	축산경영 안전 추진

	72	내수면 자원보호 관리
	73	양식장 및 낚시터 허가 관리
	74	토종 그밖의 가축 육성
	75	축산물 유통관리
	76	초지관리에 관한 사항
	77	축산물작업장 지도감독
	78	부정 축산물 단속
	79	친환경 축산 직접 지불제
	80	축산자금 융자 사후관리
	81	가축방역사업
	82	축산시책 및 축산물 브랜드화 사업
	83	축종별 경쟁력 제고사업
	84	축산분뇨 처리사업
	85	학교급식 지원사업
	86	축산재해 안전관리
	87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88	축산물판매업소인허가관리
	89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예찰
	90	공수의 위축관리
	91	동물병원·수의 약사 지도 감독
	92	동물약품 판매허가
	93	위탁영농회사에 관한 사항
	94	친환경학교급식
	95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생산자 단체 관리
문화관광과	1	관광개발계획 수립·조정
	2	관광객수용 종합대책 추진
	3	관광홍보 종합계획 수립·추진
	4	관광이벤트 행사 발굴 육성
	5	철도관광사업
	6	관광지 지정·조정·개발
	7	관광시책 발굴·추진
	8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사업
	9	관광안내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0	관광홍보물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11	여행업 관리에 관한 사항
	12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
	13	관광업체의 지도 감독
	14	정선5일장 관광상품 운영
	15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16	관광지 이용시설업에 관한 사항
	17	관광개발 진흥기금에 관한 사항
	18	관광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관광가이드 운영에 관한 사항
	20	관광통계
	21	백두대간 관광협의체 운영
	22	종합관광안내소 운영
	23	관광이용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
	24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수립·시행
	25	관광자원 조성 개발
	26	종합캠핑장 조성관리
	27	국·도립공원에 관한 협의
	28	군립공원 지정승인신청 및 군립공원 개발사업
	29	문화예술 행사
	30	문화예술진흥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31	지역축제 총괄지원
	32	(재)정선아리랑 문화재단 운영·관리
	33	문화기반시설 확충 운영관리
	34	문화재 및 문화유산관리
	35	문화원 운영관리
	36	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사항
	37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
	38	문화예술단체 관리
	39	정선아리랑 전시공연센터 운영관리
	40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 지도·감독
	41	출판사 및 인쇄사 관리
	42	아리랑전수회관 운영·관리
	43	아리랑 전수육성
	44	민속학교 운영

	45	문화재 조사·지정·보수관리
	46	사적 및 기념물 보수관리
	47	전통사찰 관리
	48	문화사업 육성
	49	컴퓨터 게임장 영업의 관리
	50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51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52	관광홍보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3	문화관광 해설사
	54	관광기념품 제작·관리에 관한 사항
	55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56	무형문화재 전승 보전 지원
	57	박물관 및 소장 유물관리
	58	향토민속 육성 지원
	59	공공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에 관한 사항
	60	지명관리, 종교단체 관리
	61	문화활동지원사업
	62	문화예술활동 육성 지원
	63	문화이용권 관리 운영
	64	정선아리랑 창작예술 및 문화행사 육성지원
	65	정선군립아리랑 예술단 운영·관리
지역경제과	1	지역경제 동향·분석관리
	2	물가종합대책
	3	공공요금 및 관인요금 관리
	4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
	5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
	6	실업대책, 고용촉진훈련사업
	7	취업정보센터 운영
	8	오지개발사업
	9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계획 수립·조정
	11	주민창업지원사업, 소상공인 용자지원
	12	민자유치 사업
	13	정선 친환경 대중 골프장 운영·관리지원
	14	폐광지역 입주기업 대체산업 용자금

	15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수립·추진
	16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
	17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 계획 수립
	18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9	유통소비 업무에 관한 사항
	20	전통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1	에너지 관련 사항
	22	원산지·불법공산품 관리·부정경쟁 방지
	23	정선아리랑 상품권 운영·관리
	24	전통시장 기반시설 및 시설 개·보수
	25	담배 소매인 지정관리
	26	승강기 및 계량기 업무
	27	석공예단지 운영·관리
	28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운영·관리
	29	제조업 및 광업업무에 관한 사항
	30	비축무연탄기금사업에 관한 사항
	31	중소기업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2	임대공장 관리 및 개·보수
	33	공장설립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4	광산 인·허가에 관한 사항
	35	광업권 및 탐사권에 관한 사항
	36	광해방지 사업에 관한 사항
	37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38	지적재산 활성화 지원사업
	39	사회적기업에 관한 사항
	40	대부업, 직업소개소에 관한 사항
	41	강원랜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허가
	42	3.3 기념사업회 업무
	43	일자리 공시제에 관한 사항
	44	마을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45	석유판매업 허가 및 관리
	46	가스업체 허가 및 관리
	47	전기 및 전화사업 관리
	48	공산품 품질관리

	49	통신판매업에 관한 사항
	50	지식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1	가스시설공업 및 열관리시설 시공업 등록 관리
	52	상거래질서제도
	53	석탄품질관리
	54	수출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건설과	1	안전정책 총괄·조정
	2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3	안전관리위원회구성·운영및일반사항
	4	안전문화운동추진 및 홍보, 안전점검의 날 운영
	5	안전관련 유관기관·단체 업무협의 및 조정
	6	소방관련 시설 및 의용소방대 지원관리
	7	시설물안전관리지도및재난예방
	8	특정관리대상물 조사 및 관리업무
	9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10	긴급구조·구난 관련기관의 협조 및 지원
	11	재난관련 단체지원·관리
	12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지원 협의
	13	도시가스, 화학물질 등 안전점검에 관한 협의
	14	재해위험지구 조사 및 관리
	15	재해대책본부 운영
	16	방재시설물 점검 관리
	17	재난복구계획 수립 및 시행
	18	재난관리기금 운용
	19	지역재난관리계획 수립
	20	지역재난대비 자원동원계획 수립
	21	재난위험시설·지역 지정관리
	22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장·단기 계획 수립
	23	재난피해조사 및 원인분석
	24	재난취약시설의 지도·점검
	25	지해위험지역 조사
	26	재난피해 복구상황관리, 복구사업비 재정 및 결산
	27	재난수습 및 긴급 복구
	28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관한 사항

	29	사도설치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30	도로점용 허가
	31	도로굴착 승인 및 심의회 운영
	32	전문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
	33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34	접도구역 관리
	35	군도, 농어촌도로 과적차량 단속
	36	특별사법경찰관리 지원업무
	37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 조종사 관리
	38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
	39	국가 기준점 관리
	40	군도 도로 보수원 관리
	41	위험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도로 표지판, 반사경 설치 등)
	42	도로 설해대책
	43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교통량 조사
	44	철길 건널목 관리
	45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관리
	46	주요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
	47	군도·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48	도로 유지관리 사업
	49	하천골재 및 육상골재 인·허가
	50	골재 선별 파쇄업 인·허가
	51	지방·준용하천 인·허가 및 관리
	52	공유수면 인·허가 및 관리
	53	하천·소하천 점·사용 허가 및 점용료 징수
	54	하천 공작물 인·허가
	55	양어장 인·허가 관리
	56	하천기본계획 수립
	57	소하천정비 및 중기계획 수립
	58	치수사업 및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59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0	기성제 정비 및 유자관리
	61	하천 댐 관련 사항
	62	하천대상 관리 및 그 밖의 수자원관리상 필요한 사항

	63	하천편입토지 보상 및 폐천부지 관리
	64	비 관리청 하천공사
	6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계획수립·시행
	66	각종 공연·축제행사 재해 대처계획 심의 및 안전점검
	67	재해예방사업
	68	물놀이 관리지역 지정·관리
	69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70	캠핑장 안전관리
	71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7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
	73	어린이보호구역 시설개선
	74	지방도로 미불용지 보상
	75	배수펌프장 운영·관리
	76	수방자재(응급복구장비) 관리
	77	풍수해 보험가입 및 재난지원금 관리
	78	지진대비 업무
	79	재난 예·경보시설 살치운영
	80	재난상황실 운영
	81	지역안전도 진단
	82	우수 저류시설 설치 및 관리
	83	사전재해영양성 검토 및 운영
	84	급경사지 지정 및 관리
	85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시행
도시건축과	1	군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재정비
	2	도시 디자인 사업의 종합기획·조정
	3	디자인 정책,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5	도시재생활성화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6	토지이용규제 KGIS 등재 및 유지관리
	7	도시계획 재정비(변경) 입안결정 및 지적고시
	8	군 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9	군계획시설사업 추진 및 관리
	10	도시계획통계,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11	용도지역 지정관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제 운영

	12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변경
	13	군계획시설유지 관리 추진
	14	장기미집행시설 특별회계 운영
	15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손실보상
	16	군계획시설의 미불용지 보상
	17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및 관리
	18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19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20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
	21	군계획시설 소송(구상권 청구 및 손해업무추진)
	22	군계획시설 민원업무 추진
	23	군계획시설 개발사업 보상 추진
	24	자전거도로 시설 및 관리
	25	보행환경개선사업추진
	26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
	27	옥외광고물관리
	28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29	건축물대장 등록·변경
	30	건축물사용승인, 용도변경허가
	31	공동주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33	농촌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운영
	34	건물동원자원 관리
	35	주택융자금 관리
	36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37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관리
	38	주택조합 설립인가
	39	택지조성 사업
	40	개발행위 허가
	41	경관주택 지원사업
	42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승인
	43	주택건설 감리자 지정
	44	불법 건축물에 관한 사항
	45	건축사, 주택건설, 사업자 관리

	46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운영
	47	농촌주택개량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48	농촌빈집 정보센터 운영
	49	재해주택 복구
	50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및 상환
	51	정선군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52	정선군 임대 아파트 특별회계 운영
	53	정선군 임대아파트 관리 전반
	54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현물)
	55	주거급여, 주택 바우처 업무
	56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57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58	자동차 의무보험·자동차 검사·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과·징수
	5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등록관련 업무
	6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및 등록관련 업무
	61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도 감독
	62	자동차 관리사업자의 지도감독
	63	택시 미터기 검정 업무
	64	법령위반 자동차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
	65	사업용 자동차 교통량 조사 관련 업무
	66	교통질서계도
	67	버스 승강장 설치 관리
	68	주차장 관련 업무
	69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70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운영
	71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보수
	72	방치차량 및 무보험 차량 관련 통고처분 및 사건송치 업무
	73	벽지노선 및 비수익 노선관리
	74	공영버스 운행 관리
	75	자동차 정비업·폐차업·매매업의 지도·감독
	76	자동차 등록 및 검사관련 업무
	77	주차장특별회계
	78	그 밖의 교통운수 행정에 관한 업무
동계올림픽지원단	1	동계올림픽 지원계획 수립·시행

	2	중앙 및 도 단위 올림픽 시책지원
	3	올림픽 관련 자료 기록 관리
	4	동계올림픽 관련 각종 행사지원
	5	동계 올림픽 선수 및 관람객 수송대책, 숙박, 안전에 관한 사항
	6	문화·관광·환경 올림픽을 위한 콘텐츠 개발
	7	동계올림픽시설 핵심 및 부대 시설사업 지원
	8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 및 사업추진
	9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 및 접근로 환경정비
	10	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대회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동계올림픽시설 사후 활용계획 및 관리방안
	12	신고 및 등록 체육시설업 관리
	13	공공체육시설 및 동네체육시설 설치관리
	14	육상실업팀육성
	15	각종 체육대회 유치 참가
	16	체육단체 및 동호회 지도관리
	17	체육진흥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18	체육회 및 생활체육 협의회 운영지도
	19	국민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0	생활체육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수상 레저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
	22	그 밖의 체육진흥 및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
규제개혁추진단	1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2	규제개혁 관련(규제 총량제, 한시적 규제유예제 등) 추진
	3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4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개선
	5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6	규제완화추진실적평가대응
	7	규제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8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별표2]

## 농업기술센터업무분장표(제7조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기술지원과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조정
	2	농촌지도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3	농업기술 공보 및 홍보
	4	관용차량·청사·채물 등의 재산관리
	5	농업경영 개선지도
	6	농업정보화 업무
	7	농촌지도자회 육성·지도
	8	오가피가공교육장 및 향토육성산업 시설 관리
	9	4-H 회 육성·지도
	10	농민회 사업 지원 및 관리
	11	생활개선회 육성·지도
	12	강소농 육성 지원
	13	도시농업 육성 및 지도
	14	농업인 전문교육
	15	농촌생활환경 개선
	16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17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도
	18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지도
	19	농업인 실용교육(명칭변경)
	20	농업인 연구 모임 육성·지도
	21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2	농업인의 날 행사 운영지원
	23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24	농업인 대학 운영
	25	귀농·귀촌 교육 및 지도
	26	농업발전 연구포럼 운영
	27	농업현장 체험 프로그램 운영
	28	농업인 회관 운영·관리
	29	농업인경영상담실, 농업도서실 운영관리
	30	농산물 소득 조사 및 분석

	31	농가경영컨설팅
	32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조사료 생산
	33	농업기계 훈련 및 순회기술교육지원
	34	농업기계 영농지원단 운영
	35	임대 농업기계 유지·관리
	36	농업기계 영농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술연구과	1	정부 및 도 보급종 종자 보급
	2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지도
	3	전작물 기술 지도
	4	농약안전사용 지도
	5	농업기상 재해관리 지도
	6	친환경농업 육성 · 지도
	7	축산기술 연구·지도
	8	특용작물재배 기술 지도
	9	산채류 및 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10	과수재배 기술지도
	11	과수연구사업
	12	과수시범포·소과류 시범포 운영
	13	민동산 역사증식 및 보존사업
	14	기후 온난화 대응작목 연구
	15	화훼재배 기술지도
	16	시설원예 기술지도
	17	수출농업 기술지도
	18	양채류재배 기술지도
	19	일반채소재배 기술지도
	20	유용곤충 산업화(추가)
	21	향토음식및식품개발 연구
	22	품목별농업인연구회 기술지도
	23	특화작목 품질향상 연구
	24	식량작물 생산기술 연구
	25	원예작물 생산기술 연구
	26	특용작물 재배기술 연구
	27	약용작물 재배기술 연구
	28	토양 및 식물체 분석 처방
	29	지력증진 및 시비개선지도

	30	지역적응 품질 선별 연구
	31	농업인 기술개발사업 추진
	32	농업인 애로기술 지도
	33	지역특화품목 육성
	34	지역농업특성화
	35	신소득작물 개발보급 및 특산품화
	36	유전자원 증식기술 개발
	37	전통발효 기술연구
	38	향토산업 육성
	39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40	친환경 병해충 방제기술 연구
	41	새기술 실증 시험포 운영
	42	농특산물 가공품 연구 및 상품화 지원
	43	농특산물 저장기술 연구
	44	가공상품 디자인 개발
	45	축산기술 시범사업 및 가축사양관리 지도
	46	친환경미생물 발효촉진제조 시설운영
	47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48	친환경 농업관리실 운영
	49	식품가공실 및 성분분석실 운영
	50	특허출원 및 지적재산권 관리
	51	국가 병해충 관리
	52	6차 산업육성 및 지도
	53	유용식물자원의 기능성 연구 및 가공상품화
	54	과학영농체험교육시설운영
	55	지역전략작목산학연 협력사업
	5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육성

[별표 3]

## 수질환경사업소업무분장표(제11조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수질환경사업소	1	사업소의 예산운영·계약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 요금 체납관리
	3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용관리
	4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운영관리
	5	광역상수도 사업추진
	6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
	7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관리
	8	마을상수도 관리
	9	먹는물 수질검사
	10	먹는물 관리업무 전반
	11	지하수 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2	지하수 보존구역 지정 운영
	13	지하수 시공업체 관리
	14	지하수 폐공 찾기 및 사후관리
	15	기타 지하수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중장기 및 정비기본계획수립 시행
	17	하수관거정비사업
	18	하수도업무추진계획수립 및 시행
	19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20	하수처리시설사업 설계용역 감독
	21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22	하수도 관리유지
	23	마을하수도 관리 및 수질검사
	24	저수조 관리
	25	전용 상수도 인·허가
	26	상수도 위탁 관리 및 경영평가
	27	청사 및 물품관리
	28	원인자 부담금 부과 징수
	29	상하수도(지하수) 사용료 부과(조정)
	30	상수도 위탁 지원 및 관리

	31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32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33	먹는물공동시설관리
	34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35	물의재이용관리업무
	36	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 시스템 관리
	37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38	배수설비설치신고에관한사항
	39	오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허가에관한사항
	40	공공하수처리시설 평가
	41	하수도 통계
	42	수질TMS 유지관리
	35	매립장 운영관리
	37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38	생활쓰레기 소각로 및 폐열 보일러 유지관리
	39	반입 폐기물 부산물 처리
	40	매립장환경오염방지대책
	41	그 밖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별표 4]

## 읍·면업무분장표(제13조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읍·면	1	서무, 인사, 선거, 보안업무, 직원의 소양(교육)과 복지, 문서관리
	2	통계, 공보, 문화, 예술 및 관광, 문화재 보호관리, 체육행사
	3	기획, 심사분석, 시책업무, 법제, 국민운동 지원
	4	여론, 동향, 각종 지시사항
	5	회계, 물품관리, 국채, 기부금품 통제, 선전
	6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국세 위탁징수
	7	군유재산의 관리
	8	사회 및 여성, 청소년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9	매화장에 관한 사항
	10	청소, 환경관리, 자연보호, 수질보전
	11	제적, 가족관계, 주민등록, 주민전산, 제증명, 인감
	12	외국인등록 주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13	범죄자, 파산자의 대장에 관한 사무
	14	농지, 관정 및 수리시설물 관리, 경지정리, 농토배양, 농기계
	15	수도작, 전작, 특작, 원예, 산림, 잠업, 양정
	16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물가안정, 저축증대
	17	소비자보호, 시장관리, 물가조사.조절, 불량.불법공산품 유통단속
	18	노정업무, 기업체관리, 에너지원 판매업체 지도감독, 운수, 교통
	19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20	건축 및 토목공사, 도로(교량) 및 하천관리, 재해대책
	21	광고물관리
	22	도시계획, 공원, 취락시설 관리, 농촌주택 개량, 기타 지역개발사업
	23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시설자연재해의 방재대책
	24	소규모시설물 관리, 농로
	25	그 밖의 읍·면 소관사무중 재무, 지적, 토지, 복지, 환경, 민원, 산업, 상공, 건설 업무에 관한 사항
	26	경보시설의 유지관리 등 경보체계의 확립
	27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28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29	기타 병무행정에 관한 사항

### 개 정 이 유

-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군정비전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지역경제에 활력과 여성·청소년 복지정책 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구 신설 및 명칭 변경, 부서별 업무 조정 및 이관에 따라
- 분장사무의 명확화를 기하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본청 실·과·단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를 규정(안 제3조, 제4조)
-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및 소관사무를 규정(안 제5조, 제7조)
- 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소관사무를 규정(안 제10조, 제11조)
- 읍·면장의 직급 및 소관사무를 규정(안 제12조, 제13조)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정 선 군 수



2014년 12월 12일

정선군 규칙 제1249호

##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규정함”을 “정함”으로 한다.

제2조 중 “직무군 포함)”를 “직무군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정선군지방공무원직렬별정원표(제2조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합 계			583	278	11	89	23	88	94
정 무 직			1	1					
일 반 직			558	273	11	69	23	88	94
지 도 직			20	2	0	18	0	0	0
연 구 직			4	2	0	2	0	0	0
정 무 직			1	1					
일 반 직	4급	지방서기관	1	1					
	4급·5급	지방서기관·행정사 무관	2	2					
		지방기술서기관·보건· 간호·의무사무관	1			1			
	5급	소 계	24	11	2	1	1	4	5
		행 정	5	3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시설	4	4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시설	7					4	3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보건·의무·간호·의료 기술	1			1			
	6급	소 계	125	70	3	11	4	17	20
		행 정	48	29	3		1	6	9
		세 무	3	3					
		전 산	1	1					
		농 업	3	3					
		녹 지	2	2					
		시 설	10	10					
환 경		1	1						
행정·세무		4	2				2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농업	6	1				1	4	
		행정·복지	1	1						
		행정·전산	1						1	
일 반 직	6급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4	3				1		
		농업·수의	1	1						
		농업·시설	4	1					3	
		보건·간호	1			1				
		시설·공업	1				1			
		공업·농촌지도사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사회복지	2						1	1
		행정·환경·공업	1				1			
		행정·환경·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5							5
		방송통신·전산	1	1						
		행정·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3				3			
		운전·기계운영	3	3						
	사무운영·시설관리	1	1							
	7급	소 계	173	95		1	23	7	23	24
		행 정	49	28		1			8	12
		세 무	8	7						1
사회복지		9	4					3	2	
전 산		1	1							
공 업		1	1							
농 업		3	3							
복 지		2	2							
보 건		8				8				
의료기술		3				3				
간 호	4				4					

		환 경	4	2			2			
일 반 직	7급	시 설	22	15			1	2	4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4	1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9	1					3	5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5	4				1		
		행정·시설	7	5				1	1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수의	2	2						
		의료기술·간호	1			1				
		보건·간호	1			1				
		보건진료	4			4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2	2						
		기계운영	2						2	
		운 전	4	3		1				
		사무운영	3	1				1	1	
	시설관리	1	1							
	운전·기계운영	2	2							
	통신운영·전기운영	1					1			
	사무운영·시설관리	1	1							
	8급	소 계	131	59	2	21	7	23	19	
		행 정	33	16	1		1	7	8	
		세 무	2	2						
		사회복지	4					2	2	
전 산		2	2							
공 업		4	2			2				
농 업		4	1				2	1		
녹 지		3	3							
보 건		0								
의료기술		3			3					
		간 호	1			1				

일 반 직	8급	환 경	2	1			1			
		시 설	15	8			1	4	2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1	1						
		행정·세무	6	1					4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4	4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2				2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7	3						4
		공업·시설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6				6			
		간호·의기	1				1			
		환경·녹지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보건·간호·의기	3				3			
		보건진료	4				4			
		토목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	1						
		운 전	4						4	
	사무운영	2	2							
	시설관리	1		1						
	9급	소 계	100	34	3	12	4	21	26	
		행 정	13	4				5	4	
		세 무	3						3	
		사회복지	14	4				4	6	
		사 서	1	1						
		공 업	3	2			1			
		농 업	5	2				2	1	
녹 지		1	1							
일	환 경	2	2							
	보 건	5			5					
	식품위생	1			1					
	시 설	3	2				1			

반 직	9급	행정·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2	2					
		시설·전산	1	1					
		토목운영	3	3					
		전화상담운영	0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4			1		1	2
		열관리 운영	0						
		운 전	18	3	1	4	1	4	5
		사무운영	14	6	1	1		3	3
		시설관리	5		1		1	1	2
		통신운영·전기운영	0						
		소 계	1	1	0	0	0	0	0
		전문경력관 나군(농기계교관)	1	1					
지 내 직	지도직 소계		20	2	0	18	0	0	0
	4급상 당	농촌지도관	1			1			
	5급상 당	농촌지도관	1			1			
	6급상당	농촌지도사	18	2		16			
연구 직	연구직 소계		4	2	0	2	0	0	0
	6급상당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2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u>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u> 군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u>규정함을</u>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 <u>제4조에 따라</u>----- ----- ----- <u>정함</u>-----.</p>
<p>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 (지방전문경력관 <u>직무군 포함</u>) 은 별표와 같다.</p>	<p>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 ----- ----- <u>직무군을 포함한다</u>----- -----.</p>

개 정 이 유

- 2014년 안전행정부 승인 통보된 증원 12명을 반영하여 민선6기 출범에 따른 조직 개편으로 직급간 조정, 부서 신설 및 변경, 업무 이관 등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정선군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별표)
  - 총 572명 ⇒ 총 584명